

사. 육아휴직

[붙임] 질병, 육아, 가족돌봄 휴·복직 처리 지침 참조

아. 연수휴직

1) 근거

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8호

2) 휴직사유

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

3) 휴직의 요건

가) 휴직 대상: 남·여 교육공무원

나) 휴직의 범위: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위취득인 경우를 말하며,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석사, 박사과정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

다)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

라)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·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 가능

마)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(교육부 교정 07000-735 '97.11.18.)

4) 휴직기간 및 횟수

가) 법정휴직기간: 3년 이내

나) 휴직의 신청,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

(1) 법정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(예: 6월 또는 1년6월)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,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함

(2)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가능

다) 휴직의 횟수

(1)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. 다만,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 수급사정, 연수의 효과, 연수(휴직)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
5) 휴직신청서류

가) 휴직신청서: 소속, 직, 성명, 휴직사유, 휴직기간 등을 명시

나) 휴직사유 입증서류

(1)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

(2)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6) 복직절차

가)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(조기 학위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)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(복직원 제출)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

※ 이 경우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(학위증 또는 연수 수료증명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함